

IV. 퇴직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³³⁾

1. 연금재정의 검증측면

가. 연금재정의 검증규정

1) 미국

매년 부담금을 재계산하며 부담금계산과정에서 재정검증을 통해 최저부담금(Minimum Required Contribution)과 최대부담금(Maximum Tax Deductible Contribution)을 산정하게 된다. 재계산 및 재정검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최저부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재정검증이 된다. 최종부담금은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내에서 결정된다. 부담금 재계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전년도 현재부채에 의해 납입시기 및 납입수준을 정하게 된다. 재계산이 완료되면 확정된 기준에 의한 부담금 정산이 이루어지며, 늦어도 다음해 8.5개월 이전에 최저기준 및 최고기준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의 납입이 완료 되도록 하고 있다.

<표 IV-1> 부담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수준 비교

구분	세부내용
현재부채(CL) ≤ 전년도 적립자산	해당년도내 직전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재계산완료 후 산출된 부담금을 납입
현재부채(CL) > 전년도 적립자산	해당년도 3.5개월부터 3개월 간격으로 전년도 부담금의 25% 수준을 각각 납입

33) 재정평가체계의 특징비교는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최저부담금 산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적용하여 최저부담금 수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① 계속기준상 최저부담금은 부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의 상각기간을 각각 최대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② 비계속기준상 최저부담금은 현재부채와 적립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추가적립비용)하게 된다.

$$\begin{aligned} \text{최저부담금} &= \text{계속기준} + \text{비계속기준} - \text{선납부담금} \\ &= \text{계속기준} [\text{NC} + \text{과거근무부채 상각 부담금 (30년)} \\ &\quad \pm \text{제도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30년)} \pm \\ &\quad \text{기초율변경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pm \\ &\quad \text{보험수리적 손익(5년)} \pm \text{기타}] + \text{비계속기준 [추가} \\ &\quad \text{적립비용}^{34)}] - \text{선납부담금}^{35)} \end{aligned}$$

나) 최대부담금 산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부담금 중 큰 금액을 최대부담금으로 산출하게 된다. 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은 부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의 상각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begin{aligned} \text{최대부담금} &= \text{NC} + \text{과거근무부채 상각부담금(10년상각)} \pm \text{제도변경} \\ &\quad \text{으로 인한 채무증가 및 감소액(10년)} \pm \text{기초율 변경으로 인한 채무} \\ &\quad \text{증가 및 감소액(10년)}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10년)} \pm \text{기타} \end{aligned}$$

다만, 계속기준상 최소부담금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대부담금으로 한다. 이에 반해 비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은 미적립채무(현재부채-적립자산)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34) 추가적립비용(additional funding charge)의 경우 현재이자율로 계산한 CL과 연금자산을 비교하여 적립율이 90%미만이면 적립부족액을 4~6년에 걸쳐 추가비용으로 부담한다.

35) 직전년도에 적립수준이상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으면 차감

최종 최대부담금 = Max(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 비계속기준상 최대부담금)

최저부담금과 최대부담금을 결정하는 경우 「Min (NC+AL³⁶)-Asset, Asset - 170%³⁷ CL)」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적립최고한도(Full Funding Limit)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최저부담금이나 최대부담금은 적립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일본

가) 계속기준 재정검증

계속기준에서는 사업년도말에서의 향후 급부현재가치(급부현재)에서, 규약에서 정한 보험료에 의해 향후 보험료수입 현재가치(보험료수입현재)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금액이 책임준비금이다³⁸). 따라서 연도말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을 상회하는 여부를 결정한다. 결산시점에서 급부현재, 보험료수입현재, 책임준비금, 적립금의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IV-1>과 같다.

이 경우 적립부족액(책임준비금-적립금)이 허용 이월부족금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의 재계산은 특별보험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허용 이월부족금 적용 3가지 방법은 ① 정기적인 재정재계산으로 보험료인상이 가능한 범위로서 장래 20년 표준보험료수입현재의 15%이하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법 ② 시가에 의한 적립금액의 변동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15%이하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법 ③ 이들 두 개의 방법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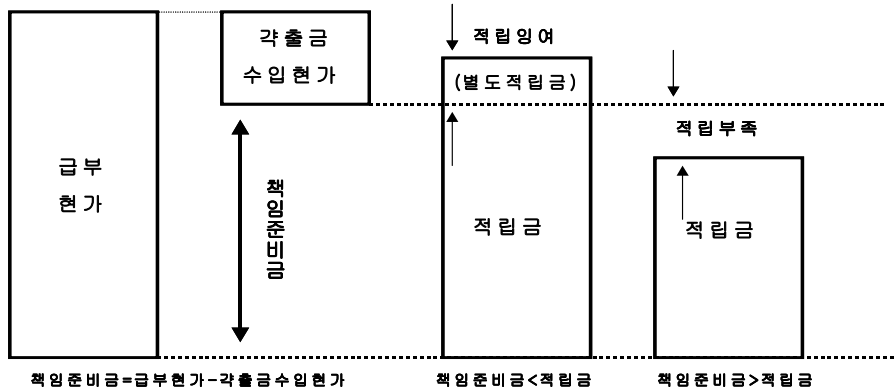
36) Accrued Liability(AL)은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되는 부채로 PBO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7) CL에 곱해지는 계수는 매년 변동하며, 이에 대한 것은 정책당국에서 정한다.

38) 법제60조 제2항, 규칙 제53조 제1항

등 3가지의 방법 중에서 각 확정급부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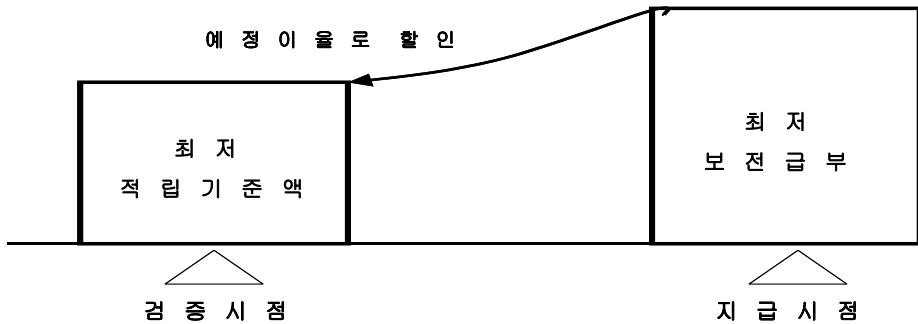
<그림 IV-1> 급부현가·각출금 수입현가·책임준비금·적립금의 관계



나) 비계속기준 재정검증

매사업연도말 적립금이 최저적립기준액을 상회하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그림IV-2>에서 보는 것처럼 최저적립기준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최저보전급부에 관계된 가입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림 IV-2> 최저적립기준액의 사고



최저적립기준액은 가입자 등의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가입자기간과 관계되는 급부(최저보전급부)의 현가평가액이다.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가입자기간에 관한 부분(최저보전급부:규약에 근거하여 재정된 연금 급부)의 산출방법은 <표IV-2>와 같은데 가입자는 가입기간 대응방식 및 지급기준 방식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표 IV-2> 최저보전급부 산출방법의 특징비교

방식		내용	산식
가입 기간 대응 방식	개념	-표준퇴직연령에서의 예상급부액에서, 현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상당하는 분을 안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frac{\text{현재급여} \times \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times \text{현시점가입기간}}{\text{표준자격상실연령가입기간}}$
	산식	- 표준자격상실연령에 도달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액×(사업연도말일까지 가입기간÷전가입기간) * 급부액은 해당사업연도말 기준적용	
지급 액기 준방 식	개념	-현시점에서 퇴직했다고 가정한 경우의 급부액에 연령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frac{\text{현재급여} \times \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times \text{현시점지급률}}{\text{표준자격상실연령지급률}}$ = 현재급여×현시점지급률 (= 요지급액, 퇴직급추계액)
	산식	당해사업연도말일에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부금×연령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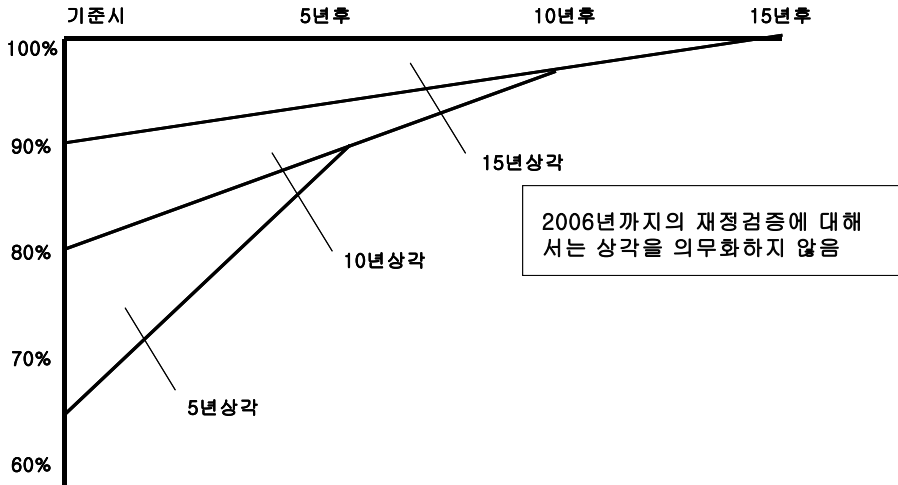
특히, 최저적립기준액의 계산기초율(현가 평가시 기초율)은 ① 예정이율의 경우 최근 5년간 20년 국채이율을 고려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한율(2002년: 2.5%), ② 예정사망율의 경우 기준사망률에 가입자 등이 남자일 경우에는 95%, 여자일 경우에는 9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율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 3월 31일까지 경과조치로서 최저적립기준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계속기준의 재정검증에서는 제도종료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의 평가는 시가자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계속기준의 재정검증에 있어 적립금액이 최저적립기준액을 하회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추가 각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2가지이며,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가능하다.

<표 IV-3> 사망률·예정이율 등의 기초율

		사망률		예정이율	기타기초율
		가입자	수급자등(주1)		
계속 기준 부협 료계 산	일반 기업연금·후 생연금기금	기준 사망률(주2) × 0%(가능)	남자×(1.0~0.9) 여자×(1.0~0.85)	장기 기대수익률에 기 초하여 설정(기업연금 마다). 단, 하한예정이 율(주3) 이상(16년도 0.9%)	원칙, 직전 3년간의 실적 및 장래예측
	300인미만 기업연금	×0% (사망률을 불충족)	남자×0.9 여자×0.85	하한예정이율이상 4.0%이하	없음
	비계속기준	-	남자×0.95 여자×0.925	직전 5년간의 30년국 채(15년까지는 20년국 채) 이율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결정, 16년도 2.29%(노사합 의 또는 대의원회 의 결을 거쳐 0.8~0.1.2 를 곱하는 경우 가능)	전회의 재정재계산에서 사용한 것
	적립상한액(주4) (수리채무의 산정)	×0%	남자×0.9 여자×0.85	하한예정이율 (16년도 0.9%)	전회의 재정재계산 에서 사용한 것
	선택일시금	-	-	하한예정이율로 계산 한 보증기간분의 현재 상당액 이하	-
	허용 이월부족금	-	-	계속기준으로 사용한 이율	전회의 재정재계산 으로 사용한 것(일 반 기업연금)
	일시금 급부액은 연금 현재상당액 을 상회하지 않 음(영제23조부칙 제24조)	전회의 재정계산에 이용한 율	-	하한예정이율 (16년도 0.9%)	-
	혼합형연금 연금 환산율(영제24조 제1항제3호)	전회의 재정계산에서 이용한 율 (부칙 제26조 제3항 제2호)	-	보험료계산에 이용한 예정이율의 하한이율 이상(16년도 0.9%)	-

- 주: 1. 수급자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2. 기준사망률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율
 3. 하한예정이율은 10년국채응모자이율의 직전 5년간의 평균 또는 직전 1년
 간에 발행한 10년국채응모자이율의 평균 중 낮은 율로 하여 후생노동대
 신이 정한 율
 4. 적립상한액은 상기 『적립상한액』의 기초율에 의해 산출한 수리채무와
 상기 『최저적립기준액』 중 큰 금액의 1.5배

<그림 IV-3> 적립수준의 회복방법



첫번째는 최저적립기준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최대 15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의 액을 계산하고, 이것을 다음사업년도의 보험료액과 비교하여 부족하면 그 부분을 각출하는 방법이다.³⁹⁾ 다만 경과조치로서 2007년 3월말까지의 사이는 최저적립금액의 90%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액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 각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두번째는 종래 후생연금기금제도에 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적립부족의 정도로 보지 않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7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⁴⁰⁾ 후생연금기금의 탄력화조치에 의해 비계속기준에서도 장기적인 시점에서 재정운영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년도 적립부족이 최저적립기준액의 20% 이내이며, 더욱이 그

39) 규칙 제58조 제1호, 제59조

40) 2003년 급부설계 및 재정기준의 개선조치로 확정금부기업연금에도 도입되었으며, 또한 2007년 3월말까지는 7년을 10년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전의 3사업년도 중 2사업년도에서도 적립부족이 최저적립기준액의 10% 이내 경우에는 비계속기준기준에 기초하여 보험료의 추가각출을 행하지 않더라도 되도록 되어 있다⁴¹⁾.

<표 IV-4> 적립비율⁴²⁾에 따른 추가각출

적립비율	2007년 3월 31일까지	2007년 4월 1일 이후
80%미만	$(\text{부족액} - \text{최저적립기준액} \times 0.2) / 5 + \text{최저적립기준액} / 100$	$(\text{부족액} - \text{최저적립기준액} \times 0.2) / 5 + \text{최저적립기준액} / 60$
80%~90%	$(\text{부족액} - \text{최저적립기준액} \times 0.1) / 10$	$(\text{부족액} - \text{최저적립기준액} \times 0.1) / 10 + \text{최저적립기준액} / 150$
90%이상	-	부족액/15

적립부족이 발생하고, ① 다음사업년도 최저적립기준예상액 - 당해 사업년도 최저적립기준액 ② 적립률(적립금÷최저적립기준액)별 추가부담액 등 ①, ②의 합계액(최저적립기준부금)이 次사업년도 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次次사업연도 부금액에 추가하여 각출하지 않으면 않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적립률이 90%이상이고, 과거 3년중 2개년이상 100%이상인 경우 추가각출이 불필요하게 된다.

다) 최저적립기준액과 수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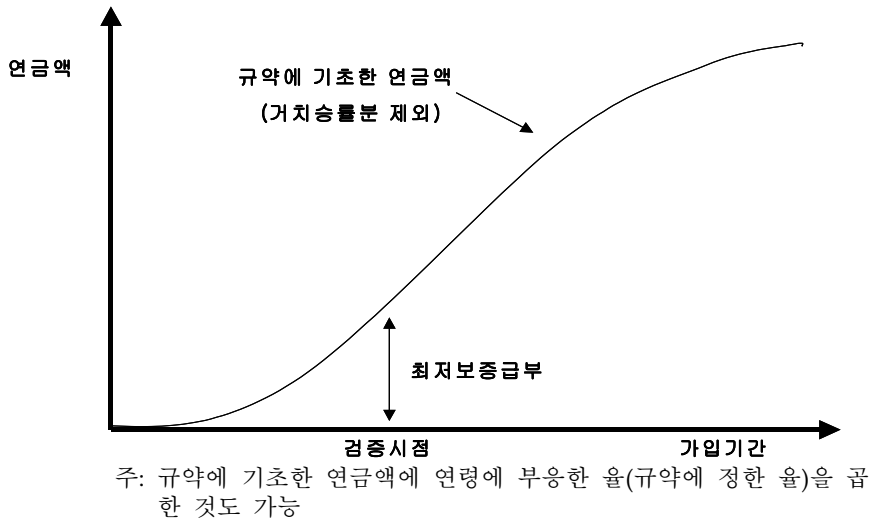
비계속기준의 척도가 되고 있는 최저적립기준액은 평가시점까지의 가입자기간에 관련된 급부로서 규약에서 정한 것의 예상액 현가로서 계산되고 있다. 최저보전급부의 현가상당액(최저적립기준액) 계산에 있어서 예정사망률은 기초사망율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사망률저하를 감안한 율을 이용하고, 30년 국채(2003년까지는 20년 국채)의 응모자이율을

41) 규칙 제59조 제2항, 부칙 제2조

42) 당해 사업연도년말일에 있어서의 적립금의 최저적립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기초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예정이율(할인율)로 할인한다. CB플랜에서는 지표이율의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최저보전급부를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IV-4> 최저보전급부의 산출



라) 보험료의 수정

확정급부기업연금에서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에 있어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의 재정검증을 행하여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수정한다. 이중 계속기준의 적립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재계산을 행하여 보험료 금액을 수정하게 되며, 재정재계산은 재정계산의 하나가 된다.

이에 대해 비계속기준의 적립부족에 따라 각출하여야 할 보험료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재정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계산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정계산에 있어 사용된 보험료계산의 전제조건(기초율)을 수정하는 것이 된다. 다만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기초율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월의 경과와 더불어 사회경제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전회 재정계산에서 이용한 예정이율

및 예정사망을 등의 기초율은 연월의 경과와 더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초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규약형 기업연금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규약형기업연금과 기금형 기업연금간으로 이행하는 경우, 가입자수가 전회 재정계산 시에 비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가입자자격 또는 급부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설립사업소단위에서 급부지급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전·승계하는 경우, 과거근무채무의 예정상각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 확정급부기업연급에 관련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화한 경우에도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⁴³⁾ 재정재계산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적립부족에 대해서는 적립부족을 향후의 보험료에 반영시킨다.

마) 기초율

첫째, 기초율의 설정과 설정의 방향이다. 재정계산에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율, 예정탈퇴율, 기타 기초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정이율은 적립금의 운용수익예측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예정사망율은 가입자 등의 성·연령별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사망율을 이용하되, 다만 기준사망율에 일정한 안정율을 하는 것도(사망율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탈퇴율은 가입자가 제도로부터 탈퇴하여 간다고 예측한 율이며 원칙적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실적과 예측에 기초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기초율은 급여의 상승률예측에 해당하는 예정승급율(급여설계에 의해 상이)등이 존재한다. 이들 기초율에 대해서도 제도의 실적과 예측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율 설정시 고려사항의 예로서 예정이율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

43) 법제58조 제2항, 규칙 제50조

의 기대수익률자체를 이용한다고 하는 사고가 존재한다. 일정한 리스크 허용하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우, 기대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대수익률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대수익률 자체를 예정이율로서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용수익이 기대수익 보다 낮은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인상이 필요하게 된다. 장래의 보험료 상승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자산운용리스크평가에 기초하여, 즉, 일정한 안전율 하에서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익률을 예정이율로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기초율의 설정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상의 리스크관리관점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초율 설정의 기준이다.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은 국채이율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설정한 율(보험료계산의 기준 일에서의 하한예정이율)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하한예정이율은 최근 5년간에 발행된 10년 국채 응모자이율의 평균 또는 최근 1년간에 발행된 10년 국채 응모자 이율의 평균 중 낮은 이율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2004년도중의 하한 예정이율은 최근 1년간에 발행된 10년 국채 응모자이율 평균의 0.9%로 하고 있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사업주부담보험료는 세제상 전액 손금산입 되는 것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예정사망율의 설정에 있어 기초사망율에 곱한 안전율에 대해서는 기탈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남성은 0.9~1.0의 범위내로 하고 있다.⁴⁴⁾ 안전율의 하한은 장래인구추계의 기초인 장래생명표의 사망률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예정사망율에 기초하여 기준사망율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각 기업연금 독자적으로 예정사망율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도 있다.

3) 영국

44) 규칙 제43조 제2항 제2호

영국 역시 최저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은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채용된 것으로, 연금급부채무에 적합한 연금자산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자산이 연금부채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100%까지 적립수준의 인상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연금수리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립수준이 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이사회는 신규 연금각출계획서를 작성, 임명연금계리인의 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 검증프로세스는 ① 3년마다 정기적인 연금수리평가 ② 연금기금으로부터 지명된 임명연금수리인과 수탁자에 의해 간행되는 매년의 연차보고서 ③ 적립수준이 최저적립수준의 100%를 하회하는 경우의 중장기적인 회복조치 및 적립수준이 최저적립기준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의 긴급한 회복조치 등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긴급한 회복조치에서는 즉시적인 현금보전이외에 은행에 의한 채무보증, 용도가 특정된 은행예금 내지 예비자산(cash reserve)보유 등의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4) 캐나다

매 3년마다 부담금을 재계산하며, 부담금 계산과정에서 재정검증을 통해 부담금의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재계산 및 재정검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최저부담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곧 재정검증이 된다. 최저한도, 최고한도 계산시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시행령(Pension Benefit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의 경우, 즉 ① 적립률(Transfer Ratio: TR)⁴⁵⁾이 80%미만인 경우 또는

45) 적립률= 연금자산액 ÷(비계속기준부채 - 수수료)

② 적립률이 90%미만이고 적립부족액⁴⁶⁾이 5,000만 달러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재계산(재정검증포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은 표준보험료(Normal Cost)와 특별보험료(Special Payment)로 구분되며 월납으로 납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부담금재계산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9월 30이전 완료) 동안은 재계산기준으로 납입하게 되며, 재계산이 완료되면, 확정된 기준에 의한 부담금정산이 이루어지고 늦어도 다음해 120일 이전에 최저기준 및 최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 납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부담금산출과 관련하여 재정방식, 기초율 등은 계리사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만 규제(Accepted Actuarial Practice)하고 있으며, 연금수리관련 세부기준은 계리사회(Canadian Institution of actuary)에서 제정한 계리표준(actuarial standard)에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계속기준평가와 비계속기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립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각해 가는 특별보험료(Special Payment)를 산출하게 된다. 계속기준에 의한 경우 ① 미적립채무발생시(채무) 자산) 일정기간(1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를 산출하는 반면 ② 일정기간(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충당하는 특별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결과, 적립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잉여금은 향후 표준보험료와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부담금 및 최대부담금(최대보험료) 한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최저부담금(Minimum Contriburion)한도는 「NC +(PSL^{set-up} + PSL^{admend})의 상각액+(SP^{GC} + SP^{soloe})-잉여금」에 의해 산정하며, 최대보험료(Maximum Contribution)한도는 「NC +(PSL^{set-up} + PSL^{admend})+ Max [UL^{GC}, (SD + 연금자산조정액)] -초과잉여금」⁴⁷⁾에 의해 산정한다.

46) 적립부족액 = 비계속기준부채 -수수료-연금자산액

47) 여기에서 UL^{GC}는 계속기준하의 미적립채무, SD는 적립부족액을 의미

<표 IV-5>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의한 재정검증 비교

	계속기준평가	비계속기준 평가
자산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평가를 Smoothing	시가평가액-청산기준수수+연금자산조정액(연금자산조정액 : 특별보험료의 5년 현재액)
채무	제도의 계속유지관점에서 장기예측에 의한 기초율(NC산출기준과 동일)을 적용하여 산출	제도청산관점에서 산출
적립부족 발생시	미적립채무발생시(채무) 자산) 일정기간(1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총당하는 특별보험료산출(SP^{GC})	일정기간(5년)동안 분할하여 적립부족에 총당하는 특별보험료 산출(SP^{solve})
적립초과 발생시	잉여금이 초과잉여금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잉여금은 향후 NC와 상계	-

주: 초과잉여금한도 = \min [(채무의 20%), (채무의 10%와 NC×2 중 큰값)]

5) 한국48)

가) 계속기준 재정검증

매 사업년도말 적립금이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일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검증기준일은 계약단체별 매 사업년도말일 기준이며, 적립금평가는 ① 시가평가 ② 또는 일정기간의 시가평가액을 평활(smoothing)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급여현재에서 장래부담금수입현재와 과거부담금수입현재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 과거근무채무의 상각기간은 10년 이내 정률 또는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을 기초로 작성

<표 IV-6> 퇴직연금 재정검증과 관련된 제반규정

근퇴법 제12조	근퇴법시행령 제4조	근퇴법시행규칙 제3조
<p>5.재정건전성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p> <p>가. 매사업연도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계속기준)</p> <p>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비계속기준)</p>	<p>법제1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은 각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으로 한다.</p>	<p>① 법제12조제5호가목은 급여에 사용되는 비용예상액의 현가에서, 장래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의 현가와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의 현가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한.</p> <p>② 법제12조제5호나목은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여 산정한 다. 이 경우 가입자별 예상급여는 당해 가입자의 근속년수에 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정한다.</p>

나) 비계속기준 재정검증

매 사업년도말 적립금이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퇴직급여추계액)의 일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검증기준일은 계속기준처럼 계약단체별 매 사업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적립금의 평가 역시 시가평가 또는 일정기간의 시가평가액을 평활(smoothing)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퇴직급여추계액)은 \sum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times 근속연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IV-7> 퇴직연금 재정검증후의 결과처리

	적립부족	초과적립
산정 방식	평가적립금 <Max(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60%,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60%) *단, 과거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필요	평가적립금 ≥ Max(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 일정비율* *당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
처리 방안	적립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상각하여 납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임.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사업년도 납입부담금에서 공제 등을 검토

나. 적립 과부족시의 조치측면

적립부족시 통상적으로 일정기간내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적립부족액비율에 따라 상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미국 등은 발생원인에 따라 상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적립한도 초과시 우선 사용자의 부담금납입을 감소 또는 중지하고, 국가에 따라서는 연금급부를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해당 초과분에 대한 사용자의 환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립과부족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8일 확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도 연금재정에 따른 과부족 발생시 법률적·행정적 조치 관련규정자체가 없어 연금재정의 검증 등이 실질적 근로자 수급권보장이 아닌 선언적

근로자 수급권보장 수준에 그칠 우려가 존재한다. 즉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립을 하지 않아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규제할 여타의 과태료부과 및 처벌 규정, 행정조치 규정 등이 전무하여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안정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에서는 최근 퇴직연금 운용기준 및 규약심사기준 등을 통해 적립과부족시 시정조치 사항을 마련한다는 일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엄격한 적립과부족시 시정조치규정이 존재하는 선진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표 IV-8> 적립과부족시 각국의 시정조치 비교

	적립부족시	적립초과시
미국	-추가부담금납입(적립률90%이하) ·연금급부개선에 따른 부족액(30년상각) ·계산기초변경에 따른 부족액(10년상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 상각기간 조정	-국세법에 의해 규제 -현재채무규모초과분은 환수 가능 (특별세 부과)
일본	-적립금이 청산기준부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족액을 7년내 해소 -연기금부족이 심각한 경우, 가입자 및 조의 동의 하에 연 급부 감소가능 -주식시장하락의 경우 최소책임준비금의 일시적 완화	-사용자부담금납입 감소 또는 중지
영국	-일정기간내 추가부담금 납입 ·3년내 최소책임준비금의 90%도달 ·10년내 최소책임준비금의 100%도달	-세법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립 최고한도를 규정 -사용자부담금납입감소(5년간)또는 연금 소급인상 ·이후 초과분은 사용자 환수가능 (특별세부과)
한국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자료: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감독모델』, 2005.6.pp.36~37

다. 연금재정의 검증주체 측면

미국에서는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수리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국세청 및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세청 및 노동부에서 정해진 원칙에 의해 샘플을 추출하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중요한 검토항목이며, 통상 연금계리사에 의한 검증절차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IV-9> 선진국의 연금계리사 제도 및 역할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유형	연금계리사	연금계리사	연금계리사 (연금수리인)	보험계리사
역할	-연금재정건전성 검증 -회계감사에 의견 반영 -감독정책에 간접 관여 -연금투자컨설팅	-연금재정건전성 검증 -제3자감독기능의 역할 -회계감사에 의견 반영 -연금투자컨설팅	-연금재정건전성 검증 -후생연금기금 재정 추계 -회계감사에 의견 반영(간접적)	-근퇴법 등 퇴직연금관련법에 규정 전무 -보험계리사 이외에도 DB형계리 업무 허용검토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을 부적정하게 적립하였을 경우에 결산 감사의 견이 부적정하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제도에 의해서 간접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퇴직연금의 재정검증을 위해 산하 연금지급금 부공사(PBGC) 등에서 연금계리사 등을 고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계리사는 1995년 연금법 제48조에 의해 연금감시자로서 역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연금기금의 재정을 상시 체크하여 연금재정악화를 조기발견,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OPRA)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연금계리사 등으로 구성된 OPRA는 수탁자의 해임

및 업무정지, 운영이 부적절한 퇴직연금에 대해 해산 또는 개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⁴⁹⁾.

일본 또한 후생연금기금 재정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금계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계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기금이 후생대신에게 제출하는 연금수리에 관한 서류에는 적정한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연금계리사가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자는 연금제도설계 및 연금계리 등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의 규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하고 있으며,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의 요건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표IV-10>참조).

이에 따라 퇴직연금감독규정 제3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⁵⁰⁾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은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의 범위에 <표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계리사이외에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업무, 금융상품개발 등과 같은 업무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9) 즉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연금계리사 등이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OPRA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즉시 서면보고토록 하고 있다.

50) 2005년 10월 28일에 퇴직연금감독규정이 확정되었다.

<표 IV-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연금계리업무 전문인력 규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p>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p>제6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p> <p>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이 경우 법 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계리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의 요건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생략
<p>제15조(운영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p> <p>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운영관리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설계 및 연금계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생략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업무를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운영관리업무의 일부수행)</p> <p>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업무”는 동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로 한다.</p> <p>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추는 것 2. 생략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전문가 등도 DB형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으로 규정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 등과 같은 제3자적 감시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금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금계리사(보험계리사) 등으로 DB형 퇴직연금 계리 전문인력으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⁵¹⁾.

<표 IV-11> DB형 퇴직연금 계리업무 전문인력 규정

요건	세부내용	근거
기본요건	-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법제14조 각호의 1의 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종사한자 -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보험업무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 법제14조 각호의 1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개발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퇴 직 연 금 감 독 규 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세부요건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재정 검증 관련 규정에 연금수리의 개념자체가 없어 보험계리사의 역할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 퇴직연금 담당자까지 연금계리업무의 취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3자적 감시기능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⁵²⁾. 이에 따라 국제적 정합성추세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문

51) 선진국은 퇴직연금계리전문인력의 역할을 연금설계전문가로서의 역할이외에 연금리스크관리전문가 및 연금재정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52) 현행처럼 비전문가에 의한 퇴직연금계리업무 취급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①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미흡 ② 제3자적 감시·관리기능 약화로 도덕적 해이증대 ③ 퇴직연금제 운용의 국제적 정합성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가위주의 연금재정 검증주체 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과거근무채무 상각 및 재정재계산 측면

가. 과거근무채무 상각측면

과거근무채무(PSL)의 상각기간은 적정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과거근무채무의 상각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은 그만큼 취약해지나, 상각기간을 짧게 할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의 자금부담을 초래하여 도입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통상 과거근무채무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 상각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30년에 걸쳐서 상각(1974년 당시 40년 상각) 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15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으며 일본은 7년~20년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재정의 건전성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급권보호차원에서 단기간에 과거근무채무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근무채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3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단서 규정⁵³⁾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설정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을 퇴직

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수준)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만,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별로 산정된 책임준비금액의 100분의 60 이하 범위안에서 <표IV-12>과 같이 과거근무채무를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⁵⁴⁾

<표 IV-1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수준

과거근로기간 연차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	-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	-	-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	-	-	-	100분의 60

<표IV-12>에서의 적립금의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5호의 각목별로 산정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당연도말일까지 적립하여야 하는 수준이며, 가입기간 전체(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에 대한 적립금 수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⁵⁾

$$\frac{[(\text{과거근로기간} \times \text{적립금 수준}) + (\text{퇴직연금 설정시점 이후의 가입기간} \times \frac{60}{100})] \times \text{급여수준}^{56)}}{\text{가입기간 전체} \times \text{급여수준}}$$

54) 노동부고시 제 2005-29호(2005년 10월 5일)

55)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적립금 수준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한다.

56) 급여수준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과거근무채무에 대한 상각기간은 과거근무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과거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차년도에, 과거근로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는 2차년도에, 과거근로기간이 3년이상 6년미만인 경우에는 3차년도에, 과거근로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는 4차년도에, 과거근로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는 5차년도에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별로 산정된 책임준비금액의 100분의 60이 되도록 과거근무채무를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과거근무채무 전액을 상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근무채무의 100분의 60만을 일정기간안에 상각하고 있다는 점, 정액균등법의 상각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 단순히 과거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상각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선진국의 상각방법과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상각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40만쯤의 미적립채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문제가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나. 재정 재계산

계산기초의 실제상황이 변경되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퇴직연금급부기준, 재정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부담금산출과 책임준비금 평가의 근본적 토대로 변경된 것으로 일시적인 적립과부족의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재계산이 필요하게 된다. 통산 3년~5년을 주기로 부담금을 재계산하고 있다.

<표 IV-13> 부담금의 재정재계산 주기 비교

국가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주기	1년	최소한 5년	3년	미확정

<표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매년 부담금을 재정재계산하고 있으며, 미국은 3년에 1번, 일본은 최소한 5년마다 1번,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금의 재정재계산에 대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작업반에서 5년 등으로 부담금의 재정재계산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노동부에서 이를 향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현재까지 부담금의 재정재계산주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부담금의 재정재계산주기의 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퇴직연금 계산기초율의 변동, 과도한 적립부족 등에 따른 연금재정의 건전성 악화문제를 제도적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재정의 검증과 관련된 일련의 제반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때, 연금재정의 건전성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금지급의 보증측면

제도 종료시에는 연금수급자에게 대한 급부 필요액을 우선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요국은 보증기구의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계 없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성측면에서는 지급보증기구가 계약이전부터 계약이행(연금지급)까지 자체 운영하는 take-over방식이 근로자입장에서 안정감이 존재하며, 비용측면에서는 buy-out방식이 부실 연기금을 정상화시킨 후 금융기관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이며 보증보험료 수준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정부기구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나 민간기구도 법정기관이며 정부가 최종보증자임을 감안하면 안정적 측면에서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급

보증제도는 퇴직연금과 공적연금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지급보증제도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있는데, 대체로 임의가입방식의 국가들은 정부에서 take-over방식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대체하는 국가들은 민간기구에서 buy-out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V-14> 지급보증기구의 지배구조 비교

	정부기관	민영기관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운영방식	Take - over(예외:캐나다)	Buy-out(예외:스위스)
지급보증의 안정성	국가기관 직접보증으로 안전성우위	민영보험으로 해결 (단,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
비용효율성	자산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이점	비교적 단순한 운영으로 비용우위
운용의 독립성	독립성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독립성 명확하게 확보 필요	원칙적으로 독립성측면에서 유리 하지만 관련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결정

자료: 이순재·김재현·이봉주·김현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 보장제도 개편방안』, 노동부, 2005.3.p.97.

미국의 경우는 적립상태가 나쁜 연금기금에 대하여 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지급급부공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연금지급급부공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금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를 고정부분과 변동부분(Variable Rate Premium : VRP)으로 구분하여 변동부분을 적립부족액인 미적립확정채무(Unfunded Vested Benefits : UVB)에 연동시킴으로써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립부족 1,000달러에 대해서 9달러의 VRP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연금기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립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Form 5500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내국세입청(IRS), 미국노동

성(DOL) 및 PBGC가 연금기금 또는 사업주의 사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작성한 양식이 Form 5500인데, 이 Form 5500의 제출을 거의 모든 연금기금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연금자산과 연금채무, 수리계산상의 가정, 각출에 관한 정보이다.

② Employer Annual Report(4010 Filing)의 제출이다, 5천만달러 이상의 미적립확정채무(UVB)가 있는 사업주에게 PBGC가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여기에는 연금종료채무(Termination Liability : TL)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가입자 및 외부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③ Participant Notice(PN)를 들 수 있다. 변동보험료(VRP)를 지불하고 동시에 추가각출(Deficit Reduction Contribution : DRC)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즉 연금자산이 현재채무(Current Liability : CL)의 80%이하인 경우에 사업주가 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이다. PN에는 적립상황 및 플랜이 종료되는 경우에 PBGC가 보증하는 급부액의 상한이 공개된다.

이처럼 미국은 엄격한 적립수준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대규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파탄이 속출하고 PBGC에 대한 1건당 지불보증청구액이 거액화되고 있다⁵⁷⁾. 이에 따라 PBGC의 재정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3년에 113억달러라는 채무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⁵⁸⁾ 현재 PBGC는 재정재건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적립률의 엄격화⁵⁹⁾, 변동보험료 산출방법의 변경⁶⁰⁾)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에는 확

57) 파탄한 기업마다 지불보증청구액의 등급을 매기면 2001~2003년 사이에 파탄한 기업이 상위 10사중 6사(Bethlehem Steel, LTV Steel, National Steel, Pan American Air, US Airlines Pilots, Trains World Airlines)를 차지하고 그 청구액 합계액은 PBGC가 지금까지 접수한 청구액 누계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58) 2003년의 Annual Report에 따르면 기업이 안고 있는 UVB 총액은 830~850억 달러이지만 현재의 PBGC의 채무액은 453억달러, 채무초과금액이 113억 달러이기 때문에 PBGC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채무(PBGC의 2003년 보증보험료 수입 : 약 9.5억달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59) 현재채무(CL)에서 연금종료채무(TL)로의 연금채무변경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연금채무가 크게되어 적립부족이 확대되고 적립상황이 나쁜 플랜기업은 보다 많은 부금각출을 요구당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60) 미국회계검사원(GAO)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에 근거한 변동보험료산출방법을

정규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의 부담증가를 따르는 것도 적지 않아 향후 기업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퇴직연금 지급보증사업은 1989년 후생연금연합회에 의하여 후생연금기금을 위해 설립되었다. 후생연금기금이 고용주의 도산 및 경영악화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연금수급자에게 일정한 연금액이 보장되도록 각 기금의 각출금을 자금으로 한 모든 기금참가자의 공제사업으로 실시되었는데, 모든 후생연금기금은 이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민간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는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지급보증사업은 연금급부확보사업, 적립기준의 검증사업 및 방문상담조연사업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5> 한국과 일본의 연금지급보증제도 비교

	일본	한국
지급보증기관	퇴직연금 지급보증사업 (후생연금기금협회사업: 1989)	<직접적인 지급보증제도>
가입대상	후생연금기금의 후생연금(국민연금)대행 부분(약 1,169만명)	-현재 기업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보증제도의 미도입
지급보장금액	대행부분의 급부현가의 30%+이를 상회 하는 부분의 50%	<간접적인 지급보증제도>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등에 의한 지 급보증
보험료	① 인수비례부분: 가입원수에 비례 ② 수익비례부분: 지급보증 한도액의 0.119% ③ 적립부족비례부분: 미적립채무의 0.352%(상한: ①+② 1,260만엔, ③ 246.4만엔)	-임금채권보장보장제도에 의한 임금 채권 보장기금에 의한 수급권장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확정형 보험상 품, 금리연동형 상품 등의 지급보증

자료: 류건식·신문식·이봉주, 「한국형 퇴직연금제의 수급권보호와 향후과제」, 일본보험학회발표논문, 2005.10 등에 의해 작성

일본은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주 도산 등에 의해 기금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리스크가 연금기금이 아니라 기업에 있음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산되는 경우 기금의 가산부분급부에 대하여 가입자, 대기자, 수급자 각각의 가산부분 해산시 책임준비금중 “대행부분 급부현가의 30%상당까지”와 “이것을 상회하는 부분의 50%상당”을 합한 금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연금급부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의 후생연금부분을 기업이 대행하는 후생연금기금에 대한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 2002년 확정급부 기업연금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는 적립부족으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기업채무를 인수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은 미국의 연금지급급부공사(PBGC)를 모델로 하여 2003년에 도입 되었다. 확정급여 퇴직연금 사업자는 강제가입(단, 공적부문, 비적격 연금제도는 제외)하게 되며, 통상 퇴직연령이상 사람은 100%, 이외의 사람은 90%의 급부를 보장하게 된다. 상한은 대략 연간 15,000 파운드(약 5,000만원)수준이다. 각출은 「인원수당 + 리스크기준 각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원수당 각출은 1인당 11파운드(약 2만원), 리스크기준 각출은 적금수준 등에 의하고 있다. 또한 제도발족시에는 인원수당 각출만이 실시되고 있으며 장래 반반이 될 까지 리스크기준 각출을 인상할 예정으로 있다. 영국의 연금보호기금은 2005년 4월이후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금보호기금 자체가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연금보호기금의 도입은 사업주의 연금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연금급부의 슬라이드 상한을 인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연금지급급부공사처럼 연금보호기금의 설치가 재무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재무력이 강한 기업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리스크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급부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기업측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기업측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연금보험기금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⁶¹⁾.

한국의 경우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지급보증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퇴직금 우선변제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1998년도입) 등과 같은 협의의 지급보증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근로자퇴직금보장법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이외에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연금지급보증과 관련된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도산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현재 5,000만원까지 지급보장이 되고 있어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시 협의의 지급보증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퇴직금 우선변제제도

퇴직금을 민사소송으로 사용자에게 청구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담보채권이나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²⁾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나 임금채권보장제도⁶³⁾

61) 이홍무, 「퇴직연금 수급권보호의 취약성과 낮은 적립수준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下)」, 『손해보험지』 10월호, 2005.10.,pp. 2-3.

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63) 퇴직금제도의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다소 높이기 위해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근로자측의 요구에 따라 임금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이 임금총액의 0.2%(2005년도 0.04%)안에서 기여하도록 하였다. 2000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이 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체불임금 보장범위에 휴업수당도 포함되고 체불임금 지급보장 대상 근로자를 도산신청일 1개월전 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서 현재 도산 신청일 6개월전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하여 해당금의 지급실적이 늘어났다. 임금채권보장에 있어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연령별로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상한을 두고 있다. 변제한도는 최종임금의 3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있다⁶⁴⁾. 그리고 제9조에서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⁵⁾. 근로자 1인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최대액은 1,020만원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퇴직일시금제도에만 국한하여 운영할지 혹은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지급보장에도 적용되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예금자보호제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상의 규정을 보면 퇴직연금의 경우 5,0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어 수탁기관 도산시 종업원의 수급권이 충분히

채권보장법의 도입, 퇴직보험제도의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등의 도입을 수용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원식,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2005년 3월., pp.104-106 참조.

64)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65) 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보장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자산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도산시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됨으로써 퇴직보험의 본래목적인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은행 1인당 5000만원이라는 타 예금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의 경우 타 예금처럼 여러 은행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예금의 예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에 비하여 퇴직연금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예치되기 때문에 예금사고발생의 리스크가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납입보험료와 운용수익을 연금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운용수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협의의 수급권보장장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시 근로자에게 완전한 수급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예금자보험제도 등에 의한 수급권보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향후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연금지급부공사(PBGC) 등과 같은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시사점

지금까지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를 ① 연금재정의 검증측면 ② PSL상각 및 재정재계산측면 ③ 연금지급의 보증측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과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을 불과

1달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재정 건전성평가체계를 선진국의 연금재정 건전성체계를 비교분석 한 결과, 전반적으로 선언적 연금재정중심의 건전성평가체계만 구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연금재정의 검증측면에서 볼 때, 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계속기준 및 비계속기준별에 따른 연금재정 검증규정이 퇴직연금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규정마련이 없어 연금재정의 검증방법 및 과정측면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 ② 적립과 부족시 조치측면의 경우, 선진국은 적립과부족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적립비율 수준 등에 따라 체계화되어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수급권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③ 연금재정의 검증주체측면에서도 선진국은 DB형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의 범위를 연금수리의 중요성 때문에 연금(보험)계리사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품개발담당자, 퇴직보험(신탁) 담당자까지 DB형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특징이 존재한다. 즉 연금재정의 검증측면에서 볼 때 보다 체계화된 법적·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PSL상각 및 재정재계산측면에서 볼 때 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과거근무채무상각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존재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보면 과거근무채무의 100분의 60만을 일정기간안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과거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상각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이 선진국의 상각방법과 차이가 존재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각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40만큼의 미적립채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문제가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재정재계산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년에 1번, 일본은 최소한 5년마다 1번,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금의 재정재계산에 대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작업반에서 5년 등으로 부담금의 재정재계산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노동부에서 이를 향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현재까지 부담금의 재정재계산주기는 확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즉 PSL상각 및 재정재계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연금지급의 급부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경우, 사후적인 지급보장장치라 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과 같은 부분적인 지급보장제도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 등과 같은 지급보장장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의 구축과 보완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과도한 연금재정의 건전성평가체계 구축은 어느 면에서 기업부담가중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나 퇴직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연금전환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에 있다는 점을 감안, 최소한도의 연금재정 건전성평가체계 구축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